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1191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15.

판결 선고2024. 11. 12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,
가. C과 피고 사이에 2022. 10. 4.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

판사방해미

별지